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 (제 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법률 제21495호,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신설·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 추천 근거 마련(안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전
- 3) 행정규제 협의 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급기준·지급절차·지급기간”을 “지급기준·지급절차·지급기간, 출입국 심사 우대자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 ④ (생략)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 이 공계 인력의 출입국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하여 출입국 심사 우 대자를 추천할 수 있다.</u>
<u>⑤</u>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u>지 급기준·지급절차·지급기간</u>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u>⑥</u> ----- ----- ----- <u>지 급기준·지급절차·지급기간</u> , <u>출입국 심사 우대자 추천에 관 한 사항</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락 처	(044) 202 - 4828